

## 현역병 입영(일자)연기 제도 개정사항 안내문

### □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제도 개선(2018.5.29.부)

- 고령자의 편법 연기 방지를 위하여 28세 이상자 연기 제한  
(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는 본 내용 준용)

구 분	종전	개정
◦ 각급학교 졸업예정	◦ 연령제한 없이 각급학교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서 1년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	◦ 각급학교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 (제한연령 + 1년)
◦ 대학원 진학예정	◦ 졸업 다음해 5월말까지 연기 (후기 10월말까지 연기)	◦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
◦ 공익·국가업무 수행	◦ 대체 불가능사유 6개월 범위 내 1회 연기	◦ 28세 이상자는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비대상
◦ 형제 동시복무	◦ 형제 전역 시까지 연기	◦ 28세 이상자는 형제의 잔여 복무 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연기 비대상
◦ 민간자격시험 응시	◦ 시험일정까지 1회 연기	
◦ 고졸 검정고시 접수	◦ 시험일정까지 연기	
◦ 직업훈련원 재원	◦ 매일 4시간 이상 수강, 졸업(수료) 까지 1회 연기	◦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
◦ 학점은행제 수강	◦ 출석수업 수강,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1회 연기	

⇒ 2018.8.1.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(각급학교 졸업예정·대학원진학예정 사유 연기는 2019.1.1.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)

### □ 국외체재 사유 입영연기 제도 개선(2018.5.29.부)

-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입영연기하는 제도가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6개월 이상 국외 체재 시 입영연기로 개선

구 분	종전	개정
국외입영연기	◦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 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	◦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시 입영연기 처리 * 6개월 미만 국외체재 시 입영일자 연기 처리(출국으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함)

⇒ 2018.8.1.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